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대희

1. Allen v. Perlmutter[1)]

-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 (1:24-cv-02665. 2024.9.26.)
- 원고 Jason Allen은 Midjourney를 이용하여 'Théâtre D'opéra Spatial(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디지털 예술 작품을 작성하여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작품이 저작권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저작권 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건의 배경

1. 원고: 디지털 예술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을 콜로라도주 박람회의 디지털 아트 사진 분야에서 AI 이미지로는 처음으로 우승(2022.8.29.),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신청(2022.9.21.).

2. 저작권청: 등록 거절(2022.12.13.), 원고: 등록 거부에 대한 재심 청구(2023.1.24.), 저작권청: 등록 불가 결론(2023.1.24.), 원고: 2차 재심 청구(2023.7.12.), 저작권청: 등록 거부 유지(2023.9.5.), 원고: 소송제기(2024.9.26.).

(2) 소송 경과

1. 원고: AI를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의 창작성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식판결 청구(2025.8.25.)

2. 피고: 적법하게 등록이 거절되었으므로 원고의 약식판결 청구를 기각하고, 반대로 피고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려 달라는 교차 약식판결 청구(2026.1.16.)

3. Edward Lee 교수: 저작권청의 등록 거부 파기를 촉구하는 제3자 법정의견서(Brief of amicus curiae)[2)] 제출

(3) 창작 과정(원고 주장)

1. 우주 헬멧을 쓰고 빅토리아 시대 의상을 착용한 여성 이미지를 구상. 작품의 색채, 스타일, 시대적 배경을 선택, 이미지 속 요소들을 배열하여 우아한 빅토리아 시대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웅장한 극장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고, 관객들이 큰 원형 창문 너머로 바깥 세계의 광대한 공간이 보이는 가운데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2.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원고는 자신의 구상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Midjourney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된 네 개의 변형 이미지를 매번 검토하면서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고 어떤 요소가 누락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1) 이 케이스의 피고는 저작권청(USCO)과 USCO의 책임자인 저작권청장 Perlmutter이다.

2) amicus curiae는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3자를 의미하는데,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제출하게 된다.

Midjourney는 버전 2의 “fast” 모드에서도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최소 약 1분 소요되었다. 원고는 각 결과물을 약 5분에서 15분, 평균적으로 약 10분 정도 검토하면서 AI가 자신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파악한 후, 다음 지시 세트에서 무엇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지 결정.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거나,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 이러한 과정을 총 624회 반복하였다.

3. 624회의 반복 과정에서 각 단어의 선택과 배열, 묘사의 구체성, 예술적 스타일을 지정하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험하고 기록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끌어내기 위하여 프롬프트 작성 기법을 발전시켰다. 624회의 생성 과정 자체만으로도 최소 624분이 소요되었고, 여기에 각 결과물을 평균 10분씩 검토한 시간을 더하면 총 6,864분, 즉 약 114.4시간 소요되었다. 여기에 각 지시문을 작성하는 시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검토한 시간, AI가 왜 자신의 지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는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구상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노력, 그리고 창의적 판단이 투입되었다.

4. Midjourney는 스스로 창의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구성한 지시를 바탕으로 결과를 생성한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Midjourney가 생성한 초기 이미지는 완성작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Gigapixel AI를 사용해 해상도와 선명도를 높이고, Adobe Photoshop을 통해 추가 요소를 더하거나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향상시켰음. 이와 같은 다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 개의 이미지를 완성하였고, 그중 하나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4) 등록 거절에 대한 원고 주장

1. Théâtre D'opéra Spatial에 대한 저작권청의 등록거절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처분임

(ⅰ) 충분할 정도로 독창적임

법원은 “사실상 새로운 어떤 것이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법칙”이고, ‘희미할 정도의 독창성 흔적’만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독창적이라는(original) 것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라, 저작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되었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창작성(creativ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창작하였고, 해당 작품은 상당한 정도의 창작성을 가진 것으로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ⅱ) 인간에 의한 저작을 포함

인간에 의한 ‘저작(human authorship)’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통제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원고는 각 요소를 선택, 조정, 배열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저작권법은 최종 작품이 “직접 또는 기계·도구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경우에도 저작물성(authorship)을 인정하고 있다.[3)]

2. 저작권청의 저작권 편람에 의하면 등록이 허용됨

저작권청 실무편람[4)]은 인간 저작자의 창의적 입력이나 관여 없이 무작위 또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단순한 기계적 과정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의 전통적 요소가 사실상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구상·실행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데(§313.2), 이는 다음의 2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

3)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 직접 또는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 인식, 복제, 기타 전달될 수 있는 독창적 저작물에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02(a)), 이는 인간이 저작물을 직접 또는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 “인식, 복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도움으로 창작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4)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 101 (3d ed. 2021).

(ⅰ) 인간이 '저작'의 구성요소를 구상

이 사건 작품은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프롬프트를 통해 작품의 개념, 장면, 분위기,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한 것이다.

(ⅱ) 인간이 저작자의 구성요소를 실행

이 사건 작품은 기계가 자율적으로 완성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이 반복적인 프롬프트 입력, 선택, 정교화, 그리고 후속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실행한 것이다.

3. 저작권청은 인간의 저작 요건을 잘못 적용하고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의 표현을 무시하였음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적 형태로 부여하는 것과 같이, 원고도 AI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적 형태로 부여하였는데, AI가 보조하는 예술도 카메라가 상상할 수 없던 예술 형식을 불러일으킨 것과 동일하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창작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라는 헌법의 요구를 위배하고 있다.[5)]

4. Midjourney의 기계적인 과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창의적·예술적 입력에 유도된 것임

저작권청은 원고가 "Midjourney 이미지에 대하여 유일하게 기여한 것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한"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창의성이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원고는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수백 번을 시도하였고, 수많은 수정과 조정에 의하여 특정 정신적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Midjourney를 사용한 것은 다른 유형의 예술과 동일하다. 사진을 포착하고 현상하는 것은 카메라지만, 구도를 구상하고 장면을 세팅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결과물을 정제하기 위하여 조정을 함으로써 최종 이미지가 자신의 정신적 비전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AI 시스템은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창의성을 시각적 형태로 실현하는 도구이다.

5.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에 있어서 기술중립적이지 않았음

저작권법은 기술 중립적이고(neutral)이고,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혁신적 저작물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사진술은 기교(skill)나 예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디지털 신시싸이저(synthesizer)와 컴퓨터 기반 음악제작시스템은 예술에서 인간을 배제한다고 비판받았다.그러나 오늘날 이들 기술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제작을 지원하는 기술에 대하여 저작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AI도 이와 동일하다.

6.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치판단을 하였음

저작권청은 이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AI를 활용한 예술에 대한 불신이나 전통적 예술관에 기초해 작품의 가치와 창작 방식을 부당하게 재단하였다.[6)]

7.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함에 있어서 부당한 요소를 고려하였음

저작권청은 작품의 독창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예술 기준, AI에 대한 불신, 창작 과정에 대한 선입견, 프롬프트나 노력의 양 같은 비본질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적절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2. Daily News LP v. Microsoft Corporation

5) "의회는,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저작물 및 발견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제한된 기간동안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연방헌법 Article I, Section 8, Clause 8.

6) 법관이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술적 판단까지 하여야 한다면, 법관이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성은 예술적 판단과 관계되지 않는다.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1:24-cv-03285, 2024.4.30.))
• 원고들인 Daily News, Chicago Tribune Company, Orlando Sentinel Communications Company, Sun-Sentinel Company, San Jose Mercury-News, DP Media Network, LLC; ORB Publishing, Northwest Publications는 신문을 발행하는 주체이고, 피고 Microsoft Corporation(MS) 및 OpenAI이다.

(1) 사실관계(원고 주장)

1. MS는 Open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이익 중 75%를 투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수령하며, 그 이후에는 지분 49%를 보유하게 된다. MS는 OpenAI와 파트너십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파트너십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GPT 모델 학습과정에서의 복제

사전 학습(pre-training) 과정은 학습데이터 셋의 생성과 처리를 위하여 저작물을 수집·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GPT-2 모델은 WebText(OpenAI가 구축한 내부 코퍼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WebText는 원고들의 웹사이트에서 스크래핑한 대규모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GPT-2에도 학습데이터로서 WebText2가 포함되어 있는데, 토큰(token)은 전체에서 4% 미만이지만 22%의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GPT-3의 학습데이터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데이터셋은 C3인데, C3에서 원고들 웹사이트 콘텐츠는 최소한 1.24억 개이다. GPT-3, GPT-3.5, GPT-4는 45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들은 WebText, WebText2를 계속 사용해 왔으며, 수백 만개의 원고들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복제해 왔다.

3. GPT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 및 2차적저작물과 저작물의 전시

GPT LLM은 파라미터에 코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암기하여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원고들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거의 그대로(near-verbatim) 출력한다. 이러한 암기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복제물 및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암기된 복제물 및 2차적저작물을 결과로 제공하거나 합성 검색결과(synthetic search result)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것은 전시에 해당한다.

4. 합성 검색결과

Copilot 및 Browse with Bing for ChatGPT에 구현되어 있는 합성 검색결과는 그라운딩(grounding)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는 원고들의 저작물을 검색결과로 제공한다. 그라운딩은 입력된 프롬프트에 따라 원고들의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저작물의 복제물도 함께 제공하여 원저작물과 동일한 정보제공의 목적을 수행한다. 합성 검색결과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원고 저작물의 여러 패러그랩이나 저작물의 대부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5. 저작권 관리정보(CMI) 제거

원고들은 저작물이 저작자 명칭, 제호, 출판사 명칭을 제공하는데, 피고들은 저작물의 스크래핑, 저작물의 데이터셋 저장, 학습, 출력물 제공의 과정에서 CMI를 고의로 제거하였다.

(2) 위반행위(원고 주장)

1. 직접침해

피고들은 ①원고들의 저작물을 스크래핑하고 제3자 데이터셋으로부터 복제하고, ②원고들 저작물을 포함하는 학습데이터셋을 저장, 처리, 복제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③모델이 저작물을 암기하고, ④ 원고들 저작물의 복제물과 2차적저작물을 출력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2. 대위침해

MS는 OpenAI의 저작권 침해를 통제·지시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음으로써 대위침해의 책임이 있다.

3. 기여침해

(ⅰ) MS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 학습데이터 구축, 학습 데이터셋의 저장·처리·복제, GPT 모델 및 생성형 AI 제품의 호스팅·운영 및 상업화를 위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OpenAI에 의한 침해에 대한 기여침해 책임이 있다.

(ⅱ)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가 직접 침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들은 최종 사용자들의 직접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조함으로써, 기여침해 책임이 있다.

4. CMI 규정 위반

피고들은 ①직접 스크래핑한 복제물, 제3자 데이터셋에서 복제된 복제물, 합성 검색결과물에서 CMI를 제거하고, ②원고들 저작물에 바탕하여 생성한 복제물 및 2차적저작물을 배포하면서 CMI를 제거함으로써, CMI 규정(§1202(b)(1), (3))을 위반하였다.[7)]

3. Huckabee v. Meta Platforms, Inc.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1:23-cv-09152, 2023.10.17.)
- Mike Huckabee 등은 Meta, Microsoft(MS)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Kadrey, Silverman 등은 Met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자는 후자에 병합되었다. 병합되는 과정에서 MS에 대해서는 취하되고, Huckabee 소송의 대부분 원고들은 Lysa Terkeurst 제외하고 탈퇴하였고, Kadrey 소송의 원고들 중에서 Michael Chabon 및 Ayelet Waldman도 탈퇴하였다. 따라서 병합된 소송의 원고들은 Kadrey, Silverman 등의 기존 작가들과 Lysa Terkeurst이고, Meta만이 피고로 남게 되었다.[8)]

4. UMG Recordings, Inc. v. Uncharted Labs, Inc.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1:24-cv-04777, 2024.6.24.)
- 원고: UMG Recordings 등은 **녹음저작물**(sound recording)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Uncharted Labs(Udio)는 Udio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1) 사실관계(원고 주장)

1. 피고는 스크래핑을 통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대규모로 복제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켰다. 피고는 2024년 AI 음악 서비스를 출시하여 텍스트 프롬프트나 오디오 파일을 입력하여 디지털 음악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서비스에 따른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저작물의 쉽게 구별 가능한 특성들을 모방한 디지털 음악 파일이다.

3.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이 제작하는 녹음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인간이 만든 녹음을 대체하여 직접

7)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 이외에도 코몬로상의 부정경쟁, 연방 상표법상의 상표 희석, 뉴욕주법상의 기업 명성 희석·손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8) Kadrey v. Meta Platforms, Inc. 케이스(23-cv-03417-VC, 2023. 7. 7.)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대희, 미국에서의 저작권 소송(2)(저작권동향, 2026. 2. 11.) 참조.

경쟁하는 디지털 음악 파일을 만들어내고, 원고들 녹음저작물의 핵심적인 표현적 특징들을 복제하고, 피고의 침해는 녹음저작물의 판매, 이용허락, 유통을 위한 기존 시장 및 잠재적 상업 시장 모두 훼손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반(원고 주장)

1. 피고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3) 피고의 답변(주장)

1.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간과정의 복제물(intermediate copy)'을 제작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서 제소될 수 없다.

(4) 녹음저작물[9] 관련 사항

이 케이스에서 피고는 원고가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오히려 이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녹음저작물(sound recording)과 관계된다. 녹음저작물은 일련의 음악·음성·그 밖의 소리가 고정됨으로써 성립하는 저작물로 정의되는데(§101), 음악 등을 음반에 고정하는 행위를 창작행위로 파악하고, 이러한 창작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녹음저작물이다. 녹음저작물의 저작자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인데, 주로 음반제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한국에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저작자로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음원을 스크래핑하여 복제하여 AI를 학습시킨 것인데, 복제되는 것은 악곡과 실연자의 실연(가창)이다. 악곡 및 가사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미국법상 실연행위를 음반에 고정하여 생기는 결과물은 녹음저작물이고 그 저작(권)자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이다. 미국 저작권법상 음반에는 ①음악저작물과 ②녹음저작물이라는 2개의 저작물이 존재하는데, 음반을 복제하여 이러한 음반과 유사한 음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녹음저작물의 저작권자(이 케이스에서는 음반제작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음반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에 한정하는가, 아니면 유사한 음악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는가 여부가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녹음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은 ①녹음저작물에 고정되어 있는 실제의 음(actual sound)을 직·간접적으로 그대로 끌어와서 복제하는 것(recapture)에 한정되고, ②복제한 음이 그 녹음저작물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흉내내거나 모방한 것이라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음을 새로이 고정시킨 다른 녹음저작물을 제작·복제하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14(b)). 녹음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이 고정시킨 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별도로 고정시킨 음(녹음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결국 녹음저작물을 이용하여 AI를 학습시키고 그 녹음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관계되는 것이지 녹음저작물과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 이 케이스에서 피고가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원고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5. UMG Recordings, Inc. v. Suno, Inc.

9) 미국 저작권법상 녹음저작물(Sound Recordings)은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생성된 저작물로 정의되는데(§101), 녹음저작물의 저작자는 한국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라고 할 수 있다.

-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1:24-cv-11611, 2024.6.24.)
- 피고가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Suno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와 원고 주장이 MG Recordings, Inc. v. Uncharted Labs, Inc. 케이스(S.D.N.Y., 1:24-cv-04777, 2024.6.24.)와 거의 동일하다.

6. Main Sequence, Ltd. v. Dudesy, LLC

-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2:24-cv-00711, 2024.1.25.)
- 원고들은 George Carlin(코미디언) 유산의 집행자 및 이와 관련된 자들이고, 피고 Dudesy LLC 등은 Carlin의 저작물(영화, TV 쇼 등)을 이용하여 코메디 대본을 만들어 Carlin이 진짜 연기한 것 같은 목소리를 생성하여 팟캐스트로 방송하였다.

(1) 위반 주장(원고)

피고들은 첫째, 팟캐스트, 웹사이트, YouTube 채널, 소셜미디어로의 트랙픽을 광고, 판매, 유도하기 위하여 Carlin의 성명, 이미지, 모습을 사용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캘리포니아 민사법 규정(§3344.1)을 위반하였다. 둘째, 원고 저작물을 흉내낸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시켰고, 이를 위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합의판결에 의한 종료

이 케이스는 합의판결(consent judgment)[10]에 의하여 종결되었는데, 피고가 제작한 영상(Dudesy Special)을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 포스팅,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George Carlin의 이미지, 음성, 모습(likeness)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7. Alter v. OpenAI Inc.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1:23-cv-10211, 2023.11.21.)
- 원고 Julian Sancton 등은 작가이고, 피고는 GPT-3, GPT-3.5, GPT-4, GPT-4 Turbo 등을 제작한 OpenAI와 MicroSoft(MS)이다. 피고들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원고들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집단소송)이다.
- **위반 주장(원고)**

1. 저작권 침해: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셋에 복제함으로써 원고들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기여침해: 피고 MS는 OpenAI에 투자를 하고 저작물의 저장·복제를 위한 맞춤형 슈퍼컴퓨팅을 설계·구축·유지하여 OpenAI의 직접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침해를 인지하고 OpenAI를 직·간접적으로 통제, 지휘, 관리함으로써 직접침해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8. Basbanes v. Microsoft Corporation

10) 합의판결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판결 형태로 확정해주는 것으로서, 계약에 가까운 합의(settlement)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과 구별된다. 만약 전자에 위반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후자에 위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1:24-cv-00084, 2024.1.5.)
- 원고 Nicholas A. Basbanes와 Nicholas Gage 등은 저널리스트이지 작가로서 OpenAI 및 M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 **위반 주장(원고)**

첫째, 피고들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그림자도서관(shadow library)에서 다운로드받은 원고들의 저작물을 데어터셋에 포함시켜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둘째, MS는 OpenAI에 의한 침해를 통제·지시하고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음으로써, OpenAI의 직접침해에 대한 대위침해 책임을 진다.

셋째, 피고들은 자본,기술, 인력 등을 제공하고 직접침해를 위한 사업적 지침 등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직접침해에 대한 기여침해 책임을 진다.[11)]

9. Chabon v. Meta Platforms Inc.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3:23-cv-04663, 2023.9.12.)
- 이 케이스는 서적 작가인 Michael Chabon 등이 Meta가 LLaMA 모델 학습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Kadrey v. Meta Platforms, Inc. 케이스(N.D.C.A., 3:23-cv-03417, 2023.7.7.)와 병합되었다.

10. Silverman v. OpenAI, Inc.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3:23-cv-03416, 2023.7.7.)
- 이 사건은 OpenAI 및 MS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여러 소송들과 함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집중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유지되지만 증거발견 절차 등은 통합되어 진행된다.
- 원고인 작가 Sarah Silverman 등이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직접·대위침해, 저작권 관리정보(CMI) 규정 위반 등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 **위반 주장(원고)**

첫째, OpenAI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에는 원고들의 서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습과정에서 원고들의 서적을 복제하였고, 모델 내에 원고 저작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계속 저장하고 있으므로 모델 자체가 2차적저작물이 되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둘째, OpenAI 모델의 결과물은 원고 저작물에서 추출된 표현적인 정보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저작물이고, OpenAI는 이러한 결과물을 통제할 권리·권한이 있고 결과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으므로, 결과물은 모두 대위침해에 해당한다.

셋째, 피고들은 학습과정에서 CMI를 제거하고, CMI가 제거된 결과물(2차적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CMI 규정을 위반하였다.

11) 첫째와 셋째 침해는 직접 및 기여침해에 관한 것인데,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OpenAI의 경우 OpenAI, Inc., OpenAI GP, L.L.C., OpenAI Holdings, LLC, OAI Corporation, LLC, OpenAI Global, LLC, OpenAI, L.L.C. and OpenAI OpCo, LLC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고, 소송전략상 기여침해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Chabon v. OpenAI, Inc.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3:23-cv-04625. 2023.9.8.)
- Silverman v. OpenAI, Inc. 케이스(3:23-cv-03416, 2023.7.7.)와 마찬가지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집중된 케이스이다.
- 원고인 작가 Michael Chabon 등이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직접·대위침해, 저작권 관리정보(CMI)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 **위반 주장(원고)**

앞서 살펴 본 Silverman v. OpenAI, Inc. 케이스(3:23-cv-03416, 2023.7.7.)와 원고의 주장사항이 거의 동일하다.

12. Concord Music Group, Inc. v. Anthropic PBC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5:24-cv-03811, 2023.10.18.)
- Concord Music Group, Inc. 등 원고들은 음악출판사들이고 피고는 Anthropic PBC이다.

(1) 사실관계(원고 주장)[12)]

1. AI 모델인 Claude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Anthropic은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통제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MusixMatch.com, LyricFind.com, Genius.com, Lyrics.com, AZLyrics.com과 같은 웹사이트와 Common Crawl 데이터셋(MusixMatch.com 등의 가사와 특정 검색어를 기준으로 수집된 173,651개의 YouTube 영상 자막으로 구성되는 YouTube Subtitles 포함) 대량 복제·수집하여 사용하였다. Anthropic은 데이터 정제, 처리, 학습, 미세조정 등의 과정에서 가사의 복제물을 제작하였다.
2. Anthropic 모델은 원고의 가사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가사를 결과물로 제공하고 있다.
3. Anthropic은 학습과정에서 작곡가 크레딧 등의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였다.

(2) 위반(원고 주장)

첫째, Anthropic은 원고들의 음악 작품(가사 포함)을 복제, 배포,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둘째, Anthropic 모델의 이용권자나 사용자들은 원고들의 음악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Anthropic은 이러한 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있고, 이들이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진다.

셋째, Antrhopic은 자신의 AI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침해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AI 모델 사용자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대위침해의 책임을 진다.

13. Andersen v. Stability AI Ltd.

12)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5.4.25. 첫 번째 수정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3:23-cv-00201, 2023.1.13.)
- Sarah Andersen 등 원고들은 만화가 및 일러스트레이터이고, 피고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 피고 Stability 및 Runway는 AI 이미지 모델인 Stable Diffusion을 학습·개발·배포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있고, Midjourney는 AI 이미지 제품인 Midjourney Product를 판매하고 있다. DevianArt는 Stable Diffusion 1.4 모델을 복제하여 구독 기반 AI 이미지 제품의 일부로서 상업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1) 사실관계(원고 주장)[13)]

1. 독일 함부르크에 기반을 둔 조직인 LAION(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Open Network)은 대규모 머신러닝 모델, 데이터셋 및 관련 코드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모든 프로젝트는 무료로 제공되는데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학습 이미지 데이터셋이다. 2021.8. 공개된 LAION-400M는 인터넷상에서 접근 가능한 4억 개의 학습 이미지 데이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미지는 데이터셋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지가 존재하는 URL에서 복제하여야 한다. 이미지를 실제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LAION이 제공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LAION-400M 학습데이터를 복제한 주체 중의 하나는 LAION 자신인데, LAION은 Common Crawl의 메타데이터 기록에서 시작하여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였다. Common Crawl은 2,5000억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데이터 집합인데, 여기에는 원고들의 이미지도 포함된다. 2022.10. LAION이 공개한 LAION-5B는 LAION-400M보다 14배 이상 큰 규모인데, 후자는 전자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2. Stable Diffusion은 CLIP-guided diffusio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CLIP-Guided Diffusion은 ①일련의 단계를 거쳐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산 모델(diffusion model)과 ②사용자 프롬프트를 생성 과정의 각 단계에서 확산 모델이 더 적절한 결과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CLIP 모델이라는 2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협력시켜 사용하는 기술이다. Midjourney도 CLIP-guided diffusion을 사용한다. CLIP 모델은 학습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되며, 'CLIP 임베딩'이라고 하는 중간 표현형식을 통하여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서로 연관짓는 것을 학습한다. 확산 모델도 학습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되며, 노이즈(noise) 덩어리를 입력으로 받은 후 노이즈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법을 학습한다. 사용자가 텍스트, 이미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프롬프트를 AI 이미지 제품에 입력하면, CLIP 모델은 이 프롬프트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여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임베딩). 이후 임베딩은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델의 결과물 생성을 조건짓는 입력 데이터(conditioning data)로 사용되고, 노이즈 제거 과정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결과물로 제공된다.

3. 확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방대한 숫자의 학습 이미지가 필요하고, AI 모델 자체는 이미지의 압축된 복사물이고(확산 모델과 데이터 압축은 연관성이 있고 Stable Diffusion은 10만 GB 이미지를 2GB 파일로 압축한 것, 학산 모델은 복사물을 저장한 것),

4. Stability는 DreamStudio라는 제품을 통하여 Stable Diffusion을 제공하고, Midjourney는 Midjourney라는 이미지 제품을 제공하고, Runway는 AI Magic Tools이라는 AI 이미지 제품을 통해 텍스트-투-이미지 생성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모델들은 원고들의 작품으로 학습되었다.

13) 이 소송은 2023.1.23. 제기되었지만, 아래 원고 주장 내용은 2023.11.29. 수정된 소장에 바탕한 것이다.

(2) 위반(원고 주장)

1. 저작권 직접침해: Stability 모델 학습에 따른 직접침해[14)]

LAION-5B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들의 저작물을 학습을 위하여 복제하고, 학습 과정에서 중간과정의(intermediate)의 복제물(예컨대 노이즈가 추가된 복제물)을 작성하였다. Stable Diffusion 모델은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모델은 원고들 저작물의 복제물 및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유인침해: Stable Diffusion 모델 배포에 따른 유인침해

Stability가 배포하는 Stable Diffusion 2.0 및 Stable Diffusion XL 1.0은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사용, 배포할 수 있고(오픈소스), 이들 모델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따라서, 이들 모델을 다운로드 등을 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다. 따라서 Stability는 이러한 침해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3. CMI 규정 위반

Stability는 LAION-5B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들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정보(CMI, 캡션, 고유식별표시, 서명, 워터마크 등)을 제거·변경함으로써, CMI 규정(§1201(b)(1))을 위반하였다.

14. UAB "Planner5D" v. Meta Platforms, Inc.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3:19-cv-03132, 2019.6.5.)
- 이 케이스는 UAB “Planner5D” v. Facebook Inc. 케이스(N.D.CA, 3:20-cv-08261-JCS, 2020.11.23.)와 병합되었고, 2025.5.13. 당사자들의 화해(화해내용은 비밀)로 종결되었다.[15)]

14) 원고들은 Stability 외에 Midjourney 및 Runaway에 대해서도 직접 및 유인침해와 CMI 규정 위반을 주장하였고, 저작권 침해 이외에 주법상의 부당이득, 연방 상표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15) 이 케이스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대희, 미국의 AI 케이스(3), 저작권동향 (2026.3.11.) 참조.

참고자료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9198079/allen-v-perlmutter/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484432/daily-news-lp-v-microsoft-corporation/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890942/huckabee-v-meta-platforms-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878697/umg-recordings-inc-v-uncharted-labs-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878608/umg-recordings-inc-v-suno-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195331/main-sequence-ltd-v-dudesy-ll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024915/sancton-v-openai-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138737/basbanes-v-microsoft-corporation/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785353/chabon-v-meta-platforms-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569254/silverman-v-openai-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778017/chabon-v-openai-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889092/concord-music-group-inc-v-anthropic-pb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732129/andersen-v-stability-ai-ltd/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15736827/uab-planner5d-v-meta-platforms-inc/